

의안 번호	1148
----------	------

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5. 6. 30.(화)
- 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회부 : 2015. 7. 1.(수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5. 7. 17.(금)

## 2. 개정이유

2014년도 4월 개장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 대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공공자전거 이용을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화 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도모코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 징수 근거 마련 (안 제12조제2항, 별표 2)
- 나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 정비

## 4. 근거법규

-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2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개정 조례안은

○ 2014년 4월 개장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문화센터 및 태화강대공원 자전거대여소의 공공자전거 이용을 이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화하여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

○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,

○ 다만, 제12조 제2항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2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데, 이에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

## < 관 계 법 령 >

###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**제10조의2(공영자전거 운영사업)**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 운영사업(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4.1.28.]

###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6조의2(공영자전거 운영사업)**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
2. 공영자전거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·관리 등에 관한 사항

[본조신설 2014.4.28]